反對 없습니까?

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

反對가 없으면 議案番號 1192號 서울特別市聖水大橋事故에 따른死傷者補償金支給條例案이 原案대로 通過되었음을 宣布합니다.

(議事棒 3打)

.....

(參 照)

서울특별시성수대교사고에따른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안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성수대교 붕괴로 발생한 사상자에 대해 국가배상법상의 배상금 외에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시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용어정의) 이 조례에서 "보상금"이라 함은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 외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을 말한다.

제 3 조(사상자의 범위 등) ①이 조례에서 "사상자"라 함은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를 말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상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 지분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.

제 4 조(성수대교 사상자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) ①이 조례에 의한 사상자에 대한 사실심사, 기타 보상 등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성수대교 사상자 보상심의위원회(이하 "보상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사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사·결정
2.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의 심의 결정
3. 기타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

③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, 위원은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④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보상심의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과장과 도로시설과장이 된다.

제 5 조(보상금) ①보상금은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액 외에 유족대표와 합의된 특별위로금으로 한다.

1. 사망자는 1인당 70,000,000원을 지급한다.
2. 부상자는 가족과 합의에 의하여 추후 시장이 정한다.

②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는 본인 또는 친권자 기타 민법상의 권리자로 한다.

제 6 조(보상신청) ①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의한 보상금 신청은 1995년 3월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. 다만, 해외이주자·국외출타자·재소자 등 부득이 기간내 신청할 수 없는 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 7 조(심의와 결정)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.

제 8 조(결정서 송달) ①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.

제 9 조(재심)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서를 받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.

제10조(지급청구) ①보상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보상금 지급을 청

구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보상금 지급청구는 지급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중 아니하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.

제11조(환수) ①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1. 사기·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
2. 과오 지급 및 이중 지급한 경우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지연 이자율을 적용한다.

제12조(공고)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시보와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1. 지급대상
2. 신청인 자격
3. 신청기간
4. 구비서류
5. 기타 필요한 사항

제13조(기타)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.....

○委員長 林東奎 존경하는 同僚委員 여러분, 그리고 執行部 關係公務員 여러분,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

이상으로 서울特別市議會 第12回 定期會中 災害對策特別委員會 第2次 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

散會를 宣布합니다.

(議事棒 3打)

(13時 03分 散會)

○出席委員

林 東 奎　權 寧 斌　朴 光 勳
李 迎 春　李 載 鎬　張 汶 龜

○專門委員

金 南 中

○出席公務員

保社環境局長　卓 秉 伍
道 路 局 長　金 震 培